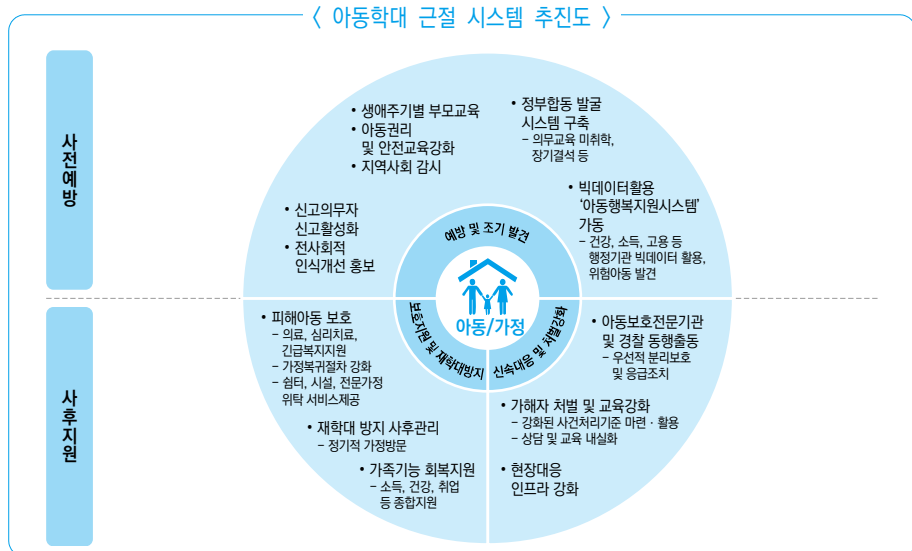


육아정책 소식

관계부처 합동 「아동학대 방지 대책」 논의·확정

정부는 3월 29일(화)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아동정책조정 위원회를 개최하여 관계부처 합동 「아동학대 방지 대책」을 논의·확정하였다.

지난해 12월 인천 초등생 감금·학대, 탈출 사건 이후 정부는 의무교육 미취학 및 장기결석 아동 등을 대상으로 관리·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해 오고 있다. 이번 대책은 이러한 합동점검의 결과와 지난 2014년 2월에 수립한 대책의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평가를 토대로 하여 지속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과제, 종전 대책에는 반영되어 있었으나 현장에서 작동이 부족했던 과제, 그리고 새롭게 추가되는 과제들을 총망라한 종합대책이다. 황 총리는 이 날 회의에서 금년을 아동학대 근절 시스템을 확고히 구축하는 “아동학대 근절의 원년”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아동학대행위가 우리사회에서 영원히 발붙일 수 없도록 학대아동의 발견, 조사, 처벌, 보호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해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고, 엄격히 집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정부는 금번에 수립된 아동학대 방지 대책들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 일정별로 구분하고, 범정부 아동학대대책추진협의회에서 매월 추진상황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아동학대 방지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전국 시행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양육수당, 출산지원금, 다자녀 공공요금 감면 등 각종 출산지원서비스를 출생신고 할 때 한 번에 신청하는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3월 31일(목)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3.0 생애주기 서비스 일환인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는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올해 3월 30일까지 서울 은평구, 서울 성북구, 부산 금정구, 광주 서구의 4개 지자체에서 시범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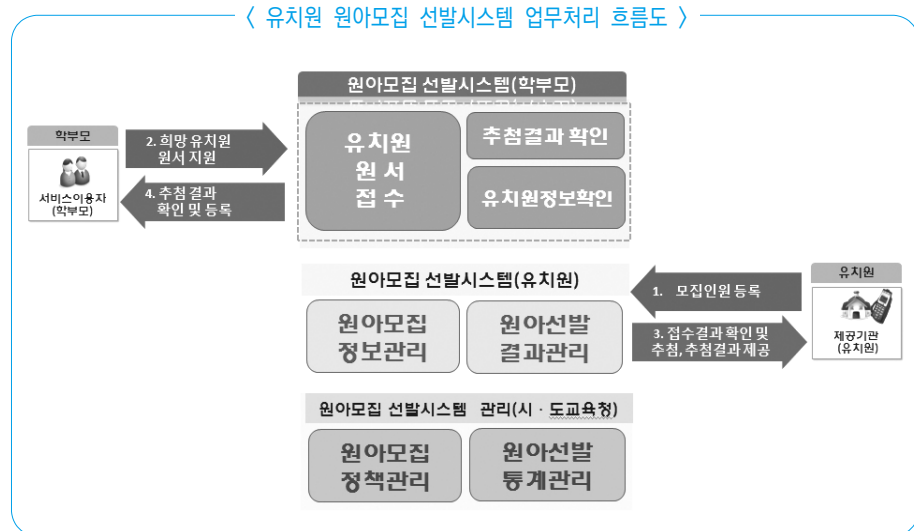
이번에 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국민은 출생신고를 하러 주민센터에 방문할 때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하여 ▲양육수당 ▲(다자녀) 전기·가스·지역난방요금 감면 ▲(지자체별) 출산지원금 ▲(지자체별) 출산축하용품 지원 ▲(지자체별) 유축기 무료대여 ▲(지자체별) 모유수유클리닉 ▲(지자체별) 다둥이 행복카드 등 필요한 출산서비스를 한 번의 신청만으로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과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정부3.0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인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출산 가족이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련기관과 협업하여 통합신청이 가능한 서비스를 확대하고, 향후 교육·취업·노후 등 생애의 중요 전환기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3.0 서비스 정부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청-지자체 간 예산·정책 협력 강화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입법예고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준식)는 4월 8일(금)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상의 교육정책협의회 설치 근거조항을 삭제하고, 그 기능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교육행정협의회로 통합하여 시도교육청과 일반자치단체 간 예산 및 정책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방교육재정에 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시도교육청과 일반자치단체 간 예산이나 정책에 대한 연계·협력이 미흡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방교육자치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에 각각 규정되어 있는 “지방교육행정협의회”와 “교육정책협의회”를 통합하여 기능을 강화하고, 시도교육청과 일반자치단체 간에 보다 실질적인 협력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유치원 원아모집 선발시스템」개발 착수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준식)는 4월 8일(금) 유치원을 지원하는 학부모의 편의를 제공하고 현장의 원아모집 관련 업무를 경감시키고자 3개 교육청(서울, 세종, 충북)과 공동으로 「유치원 원아모집 선발시스템」구축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새롭게 구축되는 「유치원 원아모집 선발시스템」은 2016년 하반기 3개 교육청을 시범 운영한 후 2017년부터 점차 전국으로 확대하여 기존 유치원별로 방문해야 했던 학부모의 불편이 크게 개선되고, 유치원에서 그동안 수작업으로 관리하던 입학 관련 업무가 대폭 경감될 전망이다. 유치원 원아모집 선발시스템은 별도의 전용 사이트를 통해 구현되며, 해당 사이트에서 원서접수, 추천결과 확인, 등록 절차가 일괄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유치원 원아모집 선발시스템」의 업무처리 과정은 다음과 같다.



0~2세반 대상 맞춤형 보육, 7월 1일부터 시행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4월 25일(월) 금년 7월 1일부터 맞춤형 보육 정책의 일환으로, 어린이집 0~2세반을 이용하는 영아들을 대상으로 현재의 12시간 종일반(7:30~19:30) 외에 맞춤형(9:00~15:00 + 긴급보육바우처 15H) 서비스가 도입됨을 발표하였다. 맞춤형 보육은 현행 무상보육체계를 보완하여 더욱 내실화 하고자 '14년 국회에서 '맞춤형 보육 시범사업'을 하기로 확정됨에 따라, '15년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정책방향을 논의하여 '15년 7월부터 시범사업을 거쳐 '15년 12월 국회에서 '16년 예산을 확정하였다. 종일반과 맞춤형 이용 관련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구분	종일반	맞춤반
이용 시간	7:30~19:30	9:00~15:00 + 긴급보육바우처 월 15시간(6만원)
보육료	1인당 월 825천원(0세기준)	1인당 월 660천원(0세기준) * 긴급보육바우처 포함 시 월 720천원
이용 대상	- 맞벌이 가정 - 구직 및 취업준비 중인 부모 - 돌봄필요가구(임신중, 장애가 있거나 장기 입원자, 다자녀, 한부모, 조손가구 등)	종일반 이용 외 아동

도시·택지개발지역 공립유치원 설립 시 지역여건 고려 가능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준식)는 4월 26일(화) 지역 간 균형 있는 공립유치원 설립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도시·택지개발지역 공립유치원 설립 시, 시·도교육감에게 정원 일부 조정 권한을 부여하고,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예고 및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입법예고 및 입법예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

도시·택지개발지역 공립유치원 신설관련 재입법예고 내용

작년 하반기, 도시개발지역, 택지개발지역에 적절한 규모의 공립유치원을 설립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신설시 초등 정원의 1/4 이상의 유아를 수용하도록 하는 공립유치원 설립 기준을 1/8 이상으로 조정하는 입법예고를 실시한 바 있으나, 공립유치원을 희망하는 학부모의 높은 수요 등을 반영하여, 기존의 1/4이상의 공립유치원 설립 기준은 유지하되, 시·도교육감이 인근의 유아교육기관 및 향후 원아수 추이 등을 고려하여 정원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수정 추진하기로 함.

실태조사 실시 관련 입법예고 내용

5년마다 수립하는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 수립 시,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유아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실태 조사의 실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